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49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1.

발 의 자:허종식·김교흥·김민기

김성주・김정호・남인순

박찬대 • 어기구 • 유동수

이용선 · 최종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「도로교통법」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(안 법률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	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	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
③ (유효기간) 제20조제2항제1	<u><</u> 삭 제>
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	
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